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3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엄태영 · 김상훈 · 김기현
이만희 · 이종배 · 김재섭
서천호 · 이상휘 · 윤한홍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거주 요건이 귀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

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 중 “3년”을 “6개월”로, “2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을 활용(임차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9항에”를 “제86조제10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	-----
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	-----
업을 신고할 수 있다.	-----.
1. 관할 시·군·구에 <u>3년</u> 이상	1. ----- <u>6개월</u> -----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	-----
민박을 <u>2년</u> 이상 계속해서 운	----- <u>6개월</u> -----
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	-----
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	-----
는 자	-----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	2. -----
는 관할 시·군·구에 <u>3년</u> 이	----- <u>6개월</u> ---
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	-----
는 자	---
<u><신 설></u>	<u>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u>
	<u>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u>
	<u>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u>

④ ~ ⑨ (생략)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u>제86조 제9항에</u>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u>인구감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을 활용(임차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u>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u>제86조 제10항에</u>----- ----- -----. 2. ~ 6. (현행과 같음)
--	--